

	<h2 style="margin: 0;">편입학운영규정</h2>	규정번호	3-3-05
		제정일자	2004. 3. 2
		개정일자	2025. 9.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4조에 의거하여 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

제2조(모집시기) 편입생 모집은 학기 개시 전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에 한해 실시한다. (개정 2021.7.16.)

제3조(지원자격) 총장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편입학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유아교육학과의 편입은 동일계열전공자만 지원가능하며, 간호학과의 편입은 불허한다. (개정 2018.11.1., 2021.7.16., 2025.9.1.)

1. 1학년 2학기 편입은 12학점 이상 취득자
2. 2학년 1학기 편입은 32학점 이상 취득자
3. 3학년 1학기 편입은 72학점 이상 취득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
6.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 취득자
7. 외국에서 수학한자

제4조(입학전형) ① 편입학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하거나 관련 법령에 의거 취득한 성적, 면접전형 등을 고려하여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선발한다. (개정 2021.7.16.)

② 편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교무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지원학과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7.16.)

제5조(학점인정) 편입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교양과목학점, 전공과목학점으로 구분 없이 제3조 제1항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점 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8.11.1.)

제6조(학점취득) ① 편입학생은 본 대학의 교양필수과목과 학과별로 지정된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 하여야 한다. 단, 편입학 전에 개설된 교양필수과목 및 전공필수과목은 이수 면제한다.

② 편입학생은 본 대학에서 2년제 40학점 이상, 3년제 3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2021.7.16.)

③ 편입학 한 학기부터 개설된 채플, 교양필수, 전공필수 과목은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4.3.1.)

제7조(이수제한)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단, 휴학 후 복학 시 전과는 가능함)  
(개정 2014.3.1.)

제8조(졸업기준) 편입학생의 졸업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1., 2021.7.16.)

1. 등록학기 : 2년제 2학기 이상, 3년제 2학기 이상.
2. 취득학점 :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2년제 40학점 이상, 3년제 38학점 이상이며, 총 취득학점 2년제 72학점, 3년제 110학점 이상

## 3. 지정된 교양 및 전공필수과목학점 취득

제9조(편입학취소) 편입학이 허가되어 등록을 마치고 수업중인자라 할지라도 학력조회 결과 허위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편입학을 취소한다. 단, 이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규정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졸업기준 등에 관한적용례) 제6조,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20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졸업기준 등에 관한적용례) 제6조,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